

## 개정법령

# 개정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

글 · 이영식 서기관 산업자원부 산업표준안전과

### ▣ 목적

전기용품의 위해로부터 소비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

### ▣ 개정법령의 요지

- 안전인증기관을 민간인증기관으로 전환
  - 현행 형식승인은 기술표준원에서 실시하여 왔으나, 앞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에 맞추어 민간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민간중심으로 추진
-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전기용품에 대하여 리콜제도를 적용
  - 전기용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량 전기용품에 대해 개선 · 파기 · 수거를 명령
  - 파기 · 수거로도 소비자의 신체 및 재산보호가 어려울 경우 언론매체를 통한 사실의 공표 · 교환 · 환불 · 수리 등을 명령
- 대상전기용품의 분류 및 안전기준을 국제기준(IEC)에 부합화
  - 공급전원 교류 50~1,000V 이하에서 사용되는 전기용품을 대상으로 하고, 국제전기기술위원회 (IEC: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)의 전기용품 분류체계에 맞추어 지정
  - 안전기준(기술기준)은 국제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마련
- 사후관리를 위한 정기검사 실시 및 보고 · 검사활동 추진
  - 년 1회 이상 제조업자의 공장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인증받은 제품의 지속적인 안전도 확인
  - 안전기준 미달 등으로 소비자의 안전위해가 크게 우려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별도로 제조현장 및 시료를 검사

## ▣ 법령개정 추진동향 및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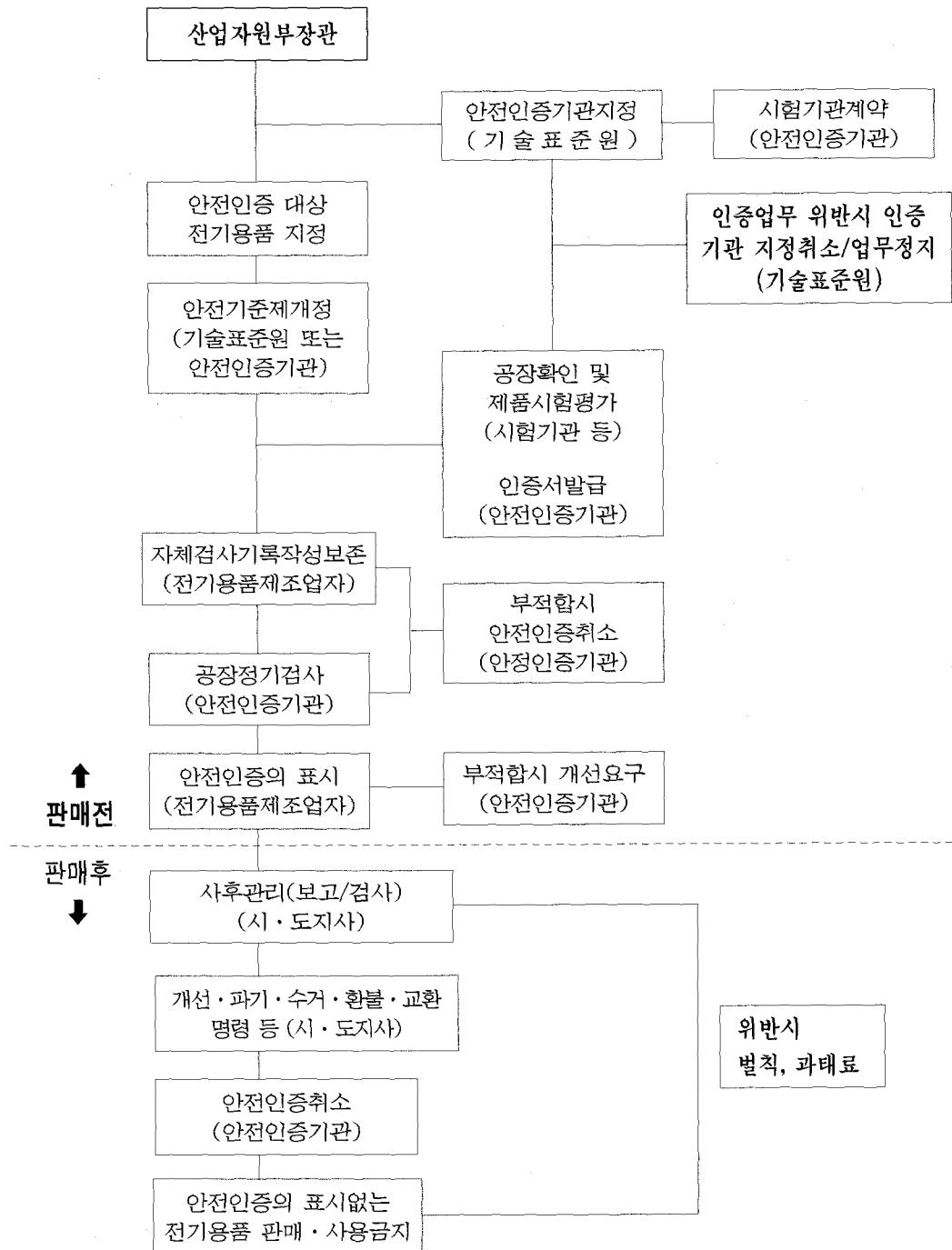
- 법률 개정 : 1999. 9. 7 공포(법률 제6019호)
-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중
  - 입법예고 : '99. 12. 24 ~2000. 1. 15
  - 시행일자 : 2000. 7. 1

## ▣ 현행 형식승인제도와 주요 내용 비교

현행(형식승인)	개정(안전인증)
○ 1종 전기용품의 제조업 등록 및 2종 전기용품 제조업의 신고	○ 폐지
○ 1종전기용품 : 절연전선 등 211개 품목 ○ 2종전기용품 : 인터폰 등 89개 품목	○ 안전인증대상품목 : 172개 품목
○ 정부(기술표준원)에서 1종 전기용품의 형식을 승인	○ 민간(안전인증기관)에서 전기안전 인증대상품목의 시험 및 인증
○ 정부(기술표준원)에서 시험기관을 지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지정시험기관은 대상전기용품의 안전 시험을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인증서 발급</li></ul>	○ 정부(기표원)에서 안전인증기관 지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시험을 실시하고 인증서 발급</li><li>- 필요시 시험을 실시기관과 인정계약</li></ul>
○ 전기용품의 수거·파기 명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기술기준에 부적합하거나 표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수거·파기토록 명령</li></ul>	○ 대상용품의 개선·수거·파기 명령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부적합 품목에 대해 일정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수거·파기 명령</li><li>- 기간내 수거·파기 명령 불이행시 정부에서 직접 수거·파기 실시</li></ul>
○ 징역 및 벌금부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부과</li><li>• 2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</li><li>• 500만원 이하</li></ul>	○ 징역 및 벌금부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전기용품안전관리법령 위반자에 대한 징역 또는 벌금 부과</li><li>•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</li><li>• 1천만원 이하</li></ul>
○ 과태료 부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허위보고 등에 대해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</li></ul>	○ 과태료 부과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사후관리검사 기피, 허위 검사기록 작성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 부과</li></ul>

## 개정법령

### 〈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체계도〉



##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

### ▣ 정의

- 전기용품 :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전기설비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계·기구·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
- 안전인증 : 전기용품제조업자가 판매를 위하여 생산·조립 또는 가공한 전기용품을 시험하고 제조·검사설비 등 생산체제를 평가하여 안전성 인증
-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: 구조·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·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발생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
- 기본모델 :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중에서 기본회로·전기적인 안전과 관련된 기본구조가 유사한 제품군 중 최초로 안전인증 받은 것
- 파생모델 :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안전과 관련된 기본구조가 기본모델과 동일하나 전기적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변경되지 않은 모델로서 부가적인 기능이 추가 또는 삭제되거나 모양 등이 변경된 모델

### ▣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

-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,000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전기용품
- 적용시기별 품목수

품목구분	품목수			
	별표2의 2 (2000. 7~)	적용기한	별표2	적용시기
1. 전선 및 전원코드	15	~2003. 6	10	2003. 7~
2. 전기기기용 스위치	9	~2002. 6	4	2002. 7~
3. 기타교류용 전기기기	3	~2002. 6	3	2002. 7~
4. 전기설비용 부속품 등	10	~2002. 6	12	2002. 7~
5. 전기용품 보호부품	7	~2003. 6	5	2003. 7~
6. 절연변압기류	3	~2002. 6	3	2002. 7~
7. 가정용 전기기기	72	~2001. 6	48	2001. 7~
8. 전동공구	8	~2003. 6	16	2003. 7~
9. 오디오/비디오응용기기	8	~2001. 6	19	2001. 7~
10. 정보/사무기기	6	~2001. 6	14	2001. 7~
11. 조명기기	31	~2003. 6	14	2003. 7~
계	172		148	* 품목계열

## 개정법령

### ▣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및 감독

- 기술표준원장은 안전수행능력이 있는 국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의·평가를 통하여 지정
  - 지정기준 : 활동의 독립성 보장, ISO/IEC GUIDE 65 및 ISO 17025에 적합, 국제전기기기 안전인증제도(IECEE)에 의한 국제적인 공인 등
- 기술표준원장은 안전인증기관의 운영상황 등을 지도·감독하고, 부정한 행위 등을 행하였을 경우에는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조치

### ▣ 안전인증의 신청 및 공장확인·시험 등

- 제조업자 등이 안전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, 안전인증기관에서 정한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(또는 시험결과 인정계약 맺은 시험기관)
- 신청서식 : 신청자 또는 제조자의 상호·대표자성명·주민등록번호(사업자 등록번호)·주소 및 연락처, 제조공장 소재지, 신청제품명 등 신청내용
- 첨부서류 : 제품설명서, 전기적 안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의 명세서, 절연재질 명세서, 전기 회로도면,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등
- \* 파생모델 신청시 기본모델 신청시 제출서류와 변동없는 서류는 제외
- 안전인증기관(또는 시험기관)은 신청을 받은 경우, 공장을 방문하여 제조·검사 설비 및 기술 능력 등을 확인
  - 동일한 공장에서 제조한 동일한 제품분류의 모델로 공장확인을 받았다면 그 확인결과를 인정
  - 외국의 공장확인은 능력을 갖춘 외국 법인 또는 단체와 대행계약 체결
- 안전인증의 시험은 시료를 제공받아 실시하며, 필요시 제조현장에 출장시험
- 외국제조업자 등의 안전인증 신청시,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시료 확인서 발급
-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되는 부품의 안전인증받은 것 사용여부 확인. 다만, IEC 적합 인증·인증기관 시험 및 인정·한국산업규격 획득 등의 부품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시험실시

### ▣ 안전인증의 실시방법

- 국내 전기용품제조업자는 출고전에, 외국 전기용품제조업자는 통관전에 안전인증을 획득
- 안전인증기관장은 공장확인 및 시험결과 안전기준에 적합하고, 계속적으로 안전을 보장할 수

있는 경우에 안전인증서 발급

- 안전인증서 포함 또는 첨부내용 : 안전인증번호, 신청자 또는 제조자의 상호 및 주소, 인증 제품내용, 적용안전기준, 안전영향 부품목록 등
- \* 안전기준은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(IEC의 안전기준 준용)
-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서 발급결과를 기록관리하고, 기표원장·관세청장·시도지사 등에게 통보
- 외국 안전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산자부장관이 해당기관을 별도로 공고
- 안전인증사항의 변경(파생모델 등재, 주소·내용변경 등)은 변경신청서와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신청
- 국내 제조업자는 출고전, 외국제조업자는 통관전에 변경
- 안전인증기관은 변경 신청시 제품·서류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시험이나 공장확인을 실시

#### ▣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

- 대상 : 수출전용, 한국산업규격 획득, 수입품의 수리·보수 부품,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 또는 시설기자재, 박람회 출품 등
- 신청기관 : 한국전기용품안전협회
- 조치사항
  - 면제대상인지를 검사 또는 확인한 후, 면제서를 발급(수출전용·KS는 제외)
  - 면제받은 제품은 면제확인 표시를 부착

#### ▣ 사후관리

- 안전인증기관(또는 별도계약 체결기관)은 안전기준의 유지, 자체검사 실시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장단위로 년1회 이상의 정기검사를 실시(현장방문)
  - 정기검사 결과 위반사항 발견시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(시·도지사)
- 제조업자는 안전기준을 준용하여 자체검사를 실시 및 기록을 보관하고, 정기검사시 안전인증 기관이 확인
- 소비자의 안전침해, 사회적 물의 야기, 정기검사결과 안전기준미달로 인해 집중관리가 필요 한 경우 등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현장검사 및 질문실시

## 개정법령

- 시도지사는 안전인증표시, 리콜제도, 안전인증 및 관련 사후관리 등의 이행여부에 대해 보고를 요청

### ▣ 시험결과의 인정계약

- 인증기관은 국내외 인증기관·시험기관 또는 기업체 자체시험소 등 안전시험능력을 갖춘 기관과 시험업무범위를 정하여 인정계약 체결
- 인정계약은 ISO 17025 및 국내 시험·검사기관공인제도(KOLAS)를 충족하는 기관과 체결
- 인정계약 체결기관의 시험결과가 안전기준에 적합할 경우 별도 시험 생략
- 국제전기기기안전인증제도(IECEE)에 의해 공인받은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와 정부가 외국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그 시험성적서를 안전인증성적서로 인정

### ▣ 안전인증의 표시

- 국내제품은 출고전, 수입제품은 통관전에 표시
- 식별용이, 인쇄 또는 각인, 표시에 대한 사항을 국영문으로 부기 가능, 검정색 등

### ▣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·파기·수거명령

- 명령대상
  -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자가 안전인증표시 또는 유사표시 : 파기 또는 수거
  - 안전기준 부적합 : 개선(기간내 미개선 : 파기 또는 수거)
  -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미표시, 변경 또는 삭제, 표시기준 위반 : 개선
  - 파기명령 불이행시 소속공무원 직접 파기(제조·수입업자 이외 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 제외)
  - 파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조업자 등이 부담

### ▣ 사실의 공표·교환·환불·수거명령

- 현저한 위해우려, 반복적 위해 발생 우려 등의 경우에 명령(시·도지사)
-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에 위해여부에 대해 검사 의뢰
- 명령이행통지를 받은 책임자는 시행계획서와 향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, 시도지

사는 명령이행상황 감독 및 결과를 평가

- 명령이행계획서 미흡시 보완요청, 진척상황 중간보고 요청, 결과 미흡시 기간을 정하여 재시정 명령 등을 실시

- 결함의 시정방법은 상황에 따라 수리 · 교환 · 환급 · 폐기 등의 방법으로 무상으로 실시(감가 상각 감안)
- 소비자가 사용중인 경우에는 사실을 공표하여 위해를 방지(언론, 우편 등 활용)

#### ▣ 1종전기용품 형식승인에 대한 경과조치

- 2000년 6월 30일까지 형식승인을 신청한 접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1종 형식승인서 교부
- 2000년 6월 30일까지 시험신청한 접수분이 시험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안전인증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
- 형식승인 시험을 신청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(해당 시험수수료는 면제)
- 유효기간 개신시험성적서(유효기간 2000년 6월 30일 이전 것)는 2000년 6월 30일까지 기술 표준원에 신청

#### ▣ 1종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특례

- 1종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형식승인모델에 대한 현황을 2000년 7월 31일 까지 안전인증기관에 통보
- 통보된 형식승인모델은 그 유효기간까지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  
다만, 품목별 적용시기 이후에는 안전기준 및 안전기준표시에 적합해야 함
- 안전인증기관은 통보받은 형식승인모델의 현황을 2000년 8월 2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통보
- 통보받은 형식승인 모델이 종전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형식승인 취소
- 2000년 7월 31일까지 통보되지 않은 형식승인모델에 대해 8월 10일까지 통보하지 않을 경우 형식승인이 취소됨을 알려주고, 그 이후에도 통보않을 시 형식승인을 취소하고 해당관세청장 및 시 · 도지사 등에게 취소사실을 통보